

## 공주 월송지구 B-1 BL 지평더웰 입주자모집공고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공주 월송 지평더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리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월송지평더웰.com>)과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자는 본 아파트가 일자별,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전에 예약하신분께 예약된 일자,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월송지평더웰.com>)를 통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당첨자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추후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해외체류 후 8월1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분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견본주택 운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1588-8046)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88-804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2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남도 공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입니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나, 본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당첨제한 사항은 청약시점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1)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공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하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월송지평더웰.co.kr](http://www.월송지평더웰.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60%)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월송지평더웰.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 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0.04.0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09월 01일(화)   | 09월 02일(수)  | 09월 03일(목) | 09월 09일(수)                   | 09월 21일(월) ~ 23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3일간(10:00~16: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장애인 및 만65세 고령자 등 인터넷취약자인 경우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li> <li>※ 은행창구 접수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 Home'</li> <li>- PC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ul> |            |                              | 당사 견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청 허가과 - 48974호(2020.08.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2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4개동 총 376세대

[특별공급 159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7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비분 | 총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br>세대수 | 저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계  |             |                   |
| 민영<br>주택 | 202000987 | 01 | 080.0037        | 80   | 80.0037                 | 24.7061    | 104.7098 | 38.3196                | 143.0294 | 62.8123     | 136        | 13       | 13        | 27       | 4         | 57 | 79          | -                 |
|          |           | 02 | 084.9645A       | 84A  | 84.9645                 | 27.9227    | 112.8872 | 40.6962                | 153.5834 | 66.7071     | 158        | 16       | 16        | 31       | 5         | 68 | 90          | -                 |
|          |           | 03 | 084.9422B       | 84B  | 84.9422                 | 29.3525    | 114.2947 | 40.6854                | 154.9801 | 66.6896     | 80         | 8        | 8         | 16       | 2         | 34 | 46          | -                 |
|          |           | 04 | 084.8644C       | 84C  | 84.8644                 | 29.9835    | 114.8479 | 40.6482                | 155.4961 | 66.6286     | 2          | 0        | 0         | 0        | 0         | 0  | 2           | -                 |
|          | 합 계       |    |                 |      |                         |            |          |                        |          |             |            | 376      | 37        | 37       | 74        | 11 | 159         | 217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 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추후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는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차량통행 구간 2.3M이상, 주차구간은 2.1M이상,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주차대수는 총 456대로 아파트 주차대수는 장애인주차포함 454대(전용 85㎡ 이하 세대당 1.2대의 비율)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2대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원)

| 주택형<br>(타입) | 층구분     | 해당<br>세대<br>수 | 분양가격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회         | 2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             |         |               |            |             |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br>30일 이내 | 2021.02.16 | 2021.06.22 | 2021.10.19 | 2022.01.18 | 2022.04.19 | 2022.07.19 |            | 입주지정기간      |
| 80          | 1층T     | 5             | 55,934,940 | 203,065,060 | 259,000,000 | 10,000,000 | 1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77,700,000  |
|             | 2층      | 7             | 55,934,940 | 189,065,060 | 245,000,000 | 10,000,000 | 1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73,500,000  |
|             | 3층~4층   | 14            | 55,934,940 | 196,065,060 | 252,000,000 | 10,000,000 | 1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75,600,000  |
|             | 5층~9층   | 35            | 55,934,940 | 203,065,060 | 259,000,000 | 10,000,000 | 1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77,700,000  |
|             | 10층~14층 | 35            | 55,934,940 | 208,065,060 | 264,000,000 | 10,000,000 | 1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79,200,000  |
|             | 15층이상   | 40            | 55,934,940 | 213,065,060 | 269,000,000 | 10,000,000 | 1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80,700,000  |
| 84A         | 1층T     | 8             | 59,403,300 | 227,896,700 | 287,300,000 | 10,000,000 | 1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86,190,000  |
|             | 2층      | 8             | 59,403,300 | 213,896,700 | 273,300,000 | 10,000,000 | 1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81,990,000  |
|             | 3층~4층   | 16            | 59,403,300 | 220,896,700 | 280,300,000 | 10,000,000 | 1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84,090,000  |
|             | 5층~9층   | 40            | 59,403,300 | 227,896,700 | 287,300,000 | 10,000,000 | 1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86,190,000  |
|             | 10층~14층 | 40            | 59,403,300 | 232,896,700 | 292,300,000 | 10,000,000 | 1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87,690,000  |
|             | 15층이상   | 46            | 59,403,300 | 237,896,700 | 297,300,000 | 10,000,000 | 1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89,190,000  |
| 84B         | 1층T     | 4             | 59,387,710 | 227,912,290 | 287,300,000 | 10,000,000 | 1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86,190,000  |
|             | 2층      | 4             | 59,387,710 | 213,912,290 | 273,300,000 | 10,000,000 | 1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27,330,000 | 81,990,000  |
|             | 3층~4층   | 8             | 59,387,710 | 220,912,290 | 280,300,000 | 10,000,000 | 1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84,090,000  |
|             | 5층~9층   | 20            | 59,387,710 | 227,912,290 | 287,300,000 | 10,000,000 | 1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28,730,000 | 86,190,000  |
|             | 10층~14층 | 20            | 59,387,710 | 232,912,290 | 292,300,000 | 10,000,000 | 1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29,230,000 | 87,690,000  |
|             | 15층이상   | 24            | 59,387,710 | 237,912,290 | 297,300,000 | 10,000,000 | 1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29,730,000 | 89,190,000  |
| 84C         | 최상층     | 2             | 59,333,320 | 279,966,680 | 339,300,000 | 10,000,000 | 2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101,790,000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비 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도로 사업승인 도서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여,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 (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을 취득하여 전북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입주시 대출잔액 여부 및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자에게 대한 또는 시공사가 상환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 분                |               | 80        | 84A | 84B | 84C | 합 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10%) | 국가유공자 등       | 3         | 4   | 2   | 0   | 9   |    |
|                    | 장애인           | 4         | 4   | 2   | 0   | 10  |    |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4   | 2   | 0   | 9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4   | 2   | 0   | 9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0%)    | —             | 13        | 16  | 8   | 0   | 37  |    |
| 신혼부부 특별공급(20%)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21  | 24  | 12  | 0   | 57 |
|                    |               | 일반공급(25%) | 6   | 7   | 4   | 0   | 1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     | —             | 4         | 5   | 2   | 0   | 11  |    |
| 합 계                |               | 57        | 68  | 34  | 0   | 159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 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86 1251 2130 1469"> <thead> <tr> <th data-bbox="286 1251 757 1294">구 분</th> <th data-bbox="757 1251 1227 1294">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27 1251 1697 1294">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97 1251 2130 1294">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6 1294 757 1337">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57 1294 1227 1337">300만원</td> <td data-bbox="1227 1294 1697 1337">250만원</td> <td data-bbox="1697 1294 2130 1337">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37 757 1380">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57 1337 1227 1380">600만원</td> <td data-bbox="1227 1337 1697 1380">400만원</td> <td data-bbox="1697 1337 2130 1380">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80 757 1423">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57 1380 1227 1423">1,000만원</td> <td data-bbox="1227 1380 1697 1423">700만원</td> <td data-bbox="1697 1380 2130 1423">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423 757 1469">모든면적</td> <td data-bbox="757 1423 1227 1469">1,500만원</td> <td data-bbox="1227 1423 1697 1469">1,000만원</td> <td data-bbox="1697 1423 2130 1469">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3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공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7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면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공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공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공급유형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br>(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br>(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br>120%이하           | 5,554,984원<br>~ 6,665,980원 | 6,226,343원<br>~ 7,471,610원 | 6,938,355원<br>~ 8,326,025원 | 7,594,084원<br>~ 9,112,900원 | 8,249,813원<br>~ 9,899,774원  | 8,905,542원<br>~ 10,686,649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br>130%이하           | 6,665,981원<br>~ 7,221,478원 | 7,471,611원<br>~ 8,094,245원 | 8,326,026원<br>~ 9,019,860원 | 9,112,901원<br>~ 9,872,308원 | 9,899,775원<br>~ 10,724,756원 | 10,686,650원<br>~ 11,577,203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자가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공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공주시) 또는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신청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공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br/>[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li> <li>※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li> <li>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li> </ul> </li> <li>※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li> </ul> </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li> <li>②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li> </ul> </li> <li>※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li> <li>※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li> <li>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li> </ul> </li> </ul> |

■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해당지역<br>공주시                         | 1순위 | 85㎡<br>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2.기타지역<br>①충청남도<br>②대전광역시<br>③세종특별자치시 |     |           | 2순위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br/>(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li> <li>■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 구 분                  | 신 청 자 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p>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9.01(화)<br>(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br>(건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li> </ul> </li> <li>건본주택 : 10:00~14:00</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2020.09.02(수)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li> </ul> </li> <li>대행은행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접수</li> </ul> </li> </ul> |
|      | 2순위                          | 2020.09.03(목) 08: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br>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br>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제외]<br>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br>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u>과거 1년간 발급</u>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해당자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限</u><br>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u>과거 3년간 발급</u>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br>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限</u><br>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u>과거 1년간 발급</u>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 일반<br>(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                      | ○    |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br>명시된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다자녀<br>특별공급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r>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br>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  |   |
|---------------------------|---|--------|--------------------------|--|---|
| 노부모<br>부양자<br>특별공급        |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br>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br>자녀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br>해당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19세이상<br>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br>[※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가능]   |
| ○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br>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제3자<br>대리인<br>신청시<br>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인이 지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가능.   |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li> <li>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li> <li>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해당직장/세무서</li> </ul>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li> <li>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징명서</li> <li>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li> <li>※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국민연금공단</li> </ul>   |
|               | 전년도 전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li> <li>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li> <li>※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ul>                    |
|               | 법인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등기소</li> </ul>       |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li>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공단</li> <li>세무서</li> </ul>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li> <li>※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ul>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li> <li>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세무서</li> </ul>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li> </ul>   |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국민연금공단</li> </ul>   |  |
| 무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 각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li> </ul>   |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 주민등록표등본 1부</li> </ul>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ul>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0.09.09(수)</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09.21.(월) ~ 2020.09.23.(수) / 시간 :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li> </ul> </li> </ul> |
| 일반공급 | 1순위<br>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고일 현재 공주시 거주신청자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대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등·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월송지평더웰.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0.09.09.(수) ~ 2020.09.18.(금)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br>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09.0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
|------|--|
| 제출기한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0.09.12.(토) ~ 2020.09.18.(금) / 7일간 / 제출시간 : 10:00 ~ 16:00   |
| 제출처  | - 당사 건본주택  |
| 유의사항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제 및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구비서류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공통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br>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br>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br>-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u>과거 1년간 발급</u>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해당자  |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限</u><br>-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u>과거 3년간 발급</u>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br>-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限</u><br>-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u>과거 1년간 발급</u>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제3자 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br>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br>- 위임인 지정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제출

■ 일반공급 중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구비서류   | 비 고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 일반공급(가점제, 예비입주자) |      | ○       | 주민등록표 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br>-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br>-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선정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br>※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일반공급 중 추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구비서류   | 비 고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 일반공급(추점제, 예비입주자)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br>※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무주택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0.09.21.(월) ~ 2020.09.23.(수)<br>10:00 ~ 16:00 | 공주 월송 지평더웰 견본주택<br>(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40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부기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통   |
|                     |      | ○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br>-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br>추가사항 | ○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 ○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도장<br>* 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배우자 포함), 위임인이 지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유효함. |
|                     | ○    |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 소유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공동주택(APT) | 전북은행 | 1013-01-3280402 | 우리자산신탁(주)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차, 2차)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그 이후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입주전에 사업주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향후 일정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품 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
|-------------|--|---|
| 바닥재         |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복도 강마루(걸레받이 포함)<br>현관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발코니바닥 타일, 다용도실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 난방,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 벽,천정        | 벽지 및 천장지, 발코니 벽 및 천장도장(일부 ABS마감), 거실아트월(타일), 주방 벽 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
| 욕 실         | 타일(바닥, 벽), 천정, 젠다이, 재료분리대, 코킹, 욕실환풍기,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일체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콘센트, 스위치)      |
| 주방가구        |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렌지 렌지후드, 주방 가전기기일체                              |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설치관련)설치에 필요한 전기, 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
|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세대내 가구일체,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
| 창호 및 기타사항   | 창호 (문틀, 목문짝, 문선,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 발코니내부 PL창호, 현관 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락,<br>주방발코니 창호, 대피실 도어, 도어록,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침실1) |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형      | 80         | 84A        | 84B        | 84C        | 비고           |
|----------|------------|------------|------------|------------|--------------|
| 마이너스옵션금액 | 25,790,000 | 27,804,000 | 28,150,000 | 28,287,000 | 취득세, 등록세 미포함 |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 발코니 확장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형 | 발코니 확장금액  | 납부일정      |           |
|-----|-----------|-----------|-----------|
|     |           | 계약금(20%)  | 잔금(80%)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80  | 5,741,000 | 1,148,200 | 4,592,800 |
| 84A | 6,543,000 | 1,308,600 | 5,234,400 |
| 84B | 5,142,000 | 1,028,400 | 4,113,600 |
| 84C | 6,837,000 | 1,367,400 | 5,469,600 |

#### 2) 발코니 확장 및 공사비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확장(계약금,잔금) | 전북은행 | 1013-01-3280430 | 우리자산신탁(주) |

####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시공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야 하며, 발코니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실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소방서 협의에 따라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1개소)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사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품목(모든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공급금액       | 납부일정      |           | 제조사                     |
|---------|-----|--------------------|------|------------|-----------|-----------|-------------------------|
|         |     |                    |      |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 80타입    | 1안  | 거실+안방(침실1)         | 2    | 3,200,000원 | 640,000   | 2,560,000 | LG전자 일반형<br>(공기청정 기능제외) |
|         | 2안  |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 4    | 6,000,000원 | 1,200,000 | 4,800,000 |                         |
| 84A,B,C | 1안  | 거실+안방(침실1)         | 2    | 3,200,000원 | 640,000   | 2,560,000 |                         |
|         | 2안  |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 4    | 6,000,000원 | 1,200,000 | 4,800,000 |                         |

2) 가전기기

(단위 : 원, VAT 포함)

| 주택형  | 설치위치 | 적용사항               | 공급금액     | 납부일정     |         | 제조사               |
|------|------|--------------------|----------|----------|---------|-------------------|
|      |      |                    |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 전 타입 | 주방   |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 850,000원 | 170,000  | 680,000 | 삼성전자[NZ63R5301CK] |
|      |      | 전기오븐               | 450,000원 | 90,000   | 360,000 | 삼성전자[HSB-N361B]   |

3) 슬라이딩도어

(단위 : 원, VAT 포함)

| 주 택 형 | 설 치 위 치 | 적 용 사 항  | 공 급 금 액  | 납 부 일 정  |         |
|-------|---------|----------|----------|----------|---------|
|       |         |          |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전 타입  | 현관      | 슬라이딩 1도어 | 700,000원 | 140,000  | 560,000 |

4) 평면옵션 - 알파룸

(단위 : 원, VAT 포함)

| 주 택 형   | 선 택 안 | 설 치 위 치 | 적 용 사 항      | 공 급 금 액    | 납부일정     |           |
|---------|-------|---------|--------------|------------|----------|-----------|
|         |       |         |              |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80타입    | 1안    | 알파룸     | 칸막이벽+도어(기본안) | 무상설치       | -        | -         |
|         | 2안    |         | 가구도어+시스템가구   | 1,150,000원 | 230,000  | 920,000   |
| 84A,B타입 | 1안    |         | 칸막이벽+도어(기본안) | 무상설치       | -        | -         |
|         | 2안    |         | 슬라이딩 2도어     | 1,100,000원 | 220,000  | 880,000   |
|         | 3안    |         | 장식장 + 시스템가구  | 1,850,000원 | 370,000  | 1,480,000 |
| 84C타입   | 1안    |         | 칸막이벽+도어(기본안) | 무상설치       | -        | -         |
|         | 2안    |         | 가구도어+시스템가구   | 1,150,000원 | 230,000  | 920,000   |
|         | 3안    |         | 장식장 + 시스템가구  | 1,850,000원 | 370,000  | 1,480,000 |

5) 불박이장

(단위 : 원, VAT 포함)

| 주 택 형 | 설 치 위 치 | 공 급 금 액   | 납부일정     |         |
|-------|---------|-----------|----------|---------|
|       |         |           | 계약금(20%) | 잔금(80%) |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전 타입  | 침실3     | 1,000,000 | 200,000  | 800,000 |

**6) 납부계좌**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0201홍길동'으로 기재)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br>(계약금, 잔금) | 전북은행 | 1013-01-3284547 | 우리자산신탁(주) |

**■ 플러스 옵션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사업승인과 별도의 입주자 추가 선택품목으로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가치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무상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합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되는 2개소(거실, 안방(침실1))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해당 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 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안에 따라 실외기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0타입, 84A,B,C타입 알파룸 옵션1안은 선택시 무상옵션으로 설치되며 그 외 옵션은 유상옵션이 적용됩니다.
- 80타입, 84A,B,C타입 알파룸 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오픈형)으로 시공되니 계약시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하이브리드(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미선택시 3구 가스렌지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혹은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구 분                | 내 용  |
|--------------------|--|
| <p><b>공통</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li> <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역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li> <li>•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p><b>건본주택</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80,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li>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출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주방발코니(다용도실) 도어는 가구도어로 계획되어 있으나 PD도어 900*2200으로 설치 시공하고 추후 설계변경 예정임.</li> <li>• 욕실 출입문은 750*2100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750*2200으로 설치 시공하고 추후 설계변경 예정임.</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li> <li>•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ul>  |
| <b>분양홍보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li> <li>•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b>계약</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 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li> </ul>   |
| <b>학교관련<br/>유의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중 초등학교는 신관초, 중학교는 공주학군(공주중, 봉황중, 공주여중, 공주영명중, 공부복중, 공주사대부중)에서 수용이 가능하나, 향후 공동주택의 진행사항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근학교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신설 또는 공동주택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당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li> </ul>   |
| <b>설계 및<br/>단지내부<br/>여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li> <li>•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풍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단지외부 도로 확장 및 보행로(인도) 이동 설치 관련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당시에 공주시, 유관기관(공주경찰서)의 요구사항으로서, 진출입시 단지내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해 기존 보행로(인도)를 차도로 확장하고 무령로에 인접한 장기로까지 (우리)단지 외부 보행로(너비 약 3.5m)는 공공 보행통로로 사용함으로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통행 방해나 다른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음.</li> <li>•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경비실 옆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PIT층,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뿔칠 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EPS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104동 앞 경비실과 연계하여 문주가 설치되므로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104동 앞으로 진출입 램프와 지하주차장 램프가 설치되어 세대조망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3동 전면에 어린이집 및 어린이 파크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2대로 지하주차장 게이트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에 관계되는 차량의 진출입을 입주인이 임의로 통제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동들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음.
- 각 동 지하층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시공되며, 입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하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 출입은 외부계단, 각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필로티 상부 2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함.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판매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잔디광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
  - 103동 1층 어린이집 설치/ 103동앞 어린이파크 설치
  - 102동 후면부 근접하여 야외 골프연습장 설치
  - 103동,104동 사이 키즈스테이션 설치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설치로 소음발생 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와, 지붕층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지하 전기실에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 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동 지붕층에 태양광 에너지설비가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 세부용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주민공동시설 용도의 범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크)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각 동의 배면(또는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1층 세대 외부 전면 발코니 앞에는 1층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고, 1층 세대를 비롯한 입주자는 테라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테라스는 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 테라스는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1층 세대만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그 외 입주자들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상부세대 낙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테라스 상부세대는 테라스 세대의 거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으로 인해 빛 간섭, 소음, 매연,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층 세대와 외부공간(외부테라스)과 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세대는 시공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창호의 크기, 형태, 난간유무,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84C타입은 테라스가 일부 옥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옥상출입시 테라스 설치에 대한 이익제기 및 철거를 요청할 수 없음.</li> <li>• 84C타입 입주자는 옥상을 개인의 용도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옥상 방화문 또한 임의적으로 조작 변경하여서는 안됨.</li> <li>•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li> <li>•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철크 및 전기실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호 하부에 DA 구조물 돌출 등에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시공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 단지 우수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li> <li>•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종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li> </ul> |
| <p><b>단위세대 및 마감재</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발코니(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발코니(다용도실)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 위치에 따라 바닥 손세탁 부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발코니(다용도실) 도어는 가구도어에서 PD도어 900*2200으로 설치되며 추후 설계변경 예정임.</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면 계획에 따라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ul>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붙박이장, 신발장 등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현관 팬트리부위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 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하부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배기가 당해 층 직배기로 되어 있어, 인근 세대로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카카오,LGU+,SKT) 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함.(소비자 별도 구축)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테라스 발코니는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은 비난방 공간임.
- 현관 바닥은 비난방 공간임.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750\*2100에서 750\*2200으로 시공되며 추후 설계변경 예정임.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시공사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설비는 창호형 자연환기시스템이며, 각 실별 창호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PL창호는 2층창으로 시공되며 안방(침실1)발코니 PL창호는 단창으로 시공됨.
- 세대내 외부유리는 1면 그린칼라로 시공됨.
- 다용도실 천정은 ABS천정재로 시공되며 배관에 의한 타공으로 타공 주위가 조잡해 보일 수 있음.
- 다용도실, 화장실 천정에는 천정틀이 시공되지 않음.
- 화장실 천정 내부에 노출되는 벽체면에는 별도의 마감재(미장모르타르 등)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각종 PD내부 벽체(골조 또는 조적벽체)에는 별도의 마감재(미장모르타르 등)가 시공되지 않음.
- 침실2 + 침실3 가변형 벽체는 확장, 비확장 선택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확장, 비확장은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항으로 선택사양에 따라 모든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공사비 증감은 없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옥외 화재 대피실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침실1 드레스룸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가 계획하였으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실이 일부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옥외 화재 대피실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외기에 직접 접한 공간으로 방화문 및 문틀주위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화재 대피실 바닥 마감은 콘크리트 마감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벽체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등으로 예방 해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 되기 쉬우며, 세대별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여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플라스틱 창호 내부는 별도의 시트지가 시공되지 않음 (플라스틱 창호는 백색으로 시공 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층 필로티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마감자재 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에 동 전기실 설치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1개 층으로 전체 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진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 계수(I <sub>E</sub> ) | 내진설계범주 | 건물중요도 | 반응수정계수(R) |
|-------------------|--------|-------------------------|--------|-------|-----------|
| 0.176<br>(지진구역 I) | SD     | 1.2                     | C      | 1급    | 4.0       |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BSC2016)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 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223(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 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건축부문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소방감리    |
|------|------------------|-------------|------------|
| 회사명  |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청림이앤씨    | (주)경민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1,026,344,000    | 371,159,589 | 49,5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천원)

| 구분  |         | 금액           | 구분        |         | 금액        | 구분          |             | 금액        |            |           |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17,667,968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20,435,000  |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 732,000    |           |
|     | 기간이자    | 1,906,287    |           |         | 용접공사      |             |             | 난방설비공사    | 793,000    |           |
|     | 필요적 경비  | 933,084      |           |         | 조적공사      | 244,000     |             | 가스설비공사    | 305,000    |           |
|     | 그 밖의 비용 | 1,355,218    |           |         | 미장공사      | 305,000     |             | 자동제어설비공사  | 183,000    |           |
|     | 계       | 21,862,557   |           |         | 단열공사      | 610,000     |             | 특수설비공사    |            |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         | 488,000   | 방수, 방습공사    |             | 549,000   | 공조설비공사     |           |
|     |         | 흙막이공사        |           |         |           | 목공사         |             | 1,952,000 | 전기설비공사     | 4,575,000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가구공사        | 1,220,000   | 정보통신공사    | 3,355,000  |           |
|     |         | 옹벽공사         |           |         | 122,000   | 금속공사        | 1,098,000   | 소방설비공사    | 3,965,000  |           |
|     |         | 석축공사         |           |         |           | 지붕 및 홈통공사   | 305,000     | 승강기공사     | 1,342,000  |           |
|     |         | 우, 오수공사      |           |         | 244,000   | 창호공사        | 1,525,000   | 일반관리비     | 2,440,000  |           |
|     |         | 공동구공사        |           |         |           | 유리공사        | 549,000     | 이윤        | 2,440,000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 타일공사        | 1,037,000   | 계         | 60,756,000 |           |
|     |         | 도로포장공사       |           |         | 305,000   | 돌공사         | 366,000     | 설계비       | 456,000    |           |
|     | 건축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61,000    | 도장공사        | 671,000     | 감리비       | 1447,003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도배공사        | 732,000     | 일반분양시설경비  | 4,400,000  |           |
|     |         | 조경공사         |           |         | 610,000   | 수장공사        | 1,220,000   | 분담금 및 부담비 | 895,400    |           |
|     |         | 부대시설공사       |           |         | 366,000   | 주방용구공사      | 1,830,000   | 보상비       | 50,000     |           |
|     |         | 공통가설공사       |           |         | 152,500   | 그 밖의 건축공사   | 244,000     | 기타사업비성 경비 | 10,841,371 |           |
|     |         | 가시설물공사       |           |         | 152,500   | 급수설비공사      | 610,000     | 계         | 18,089,774 |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1,525,000 | 급탕설비공사  | 610,000   | 그 밖의 비용     | 4,614,669   |           |            |           |
|     |         | 철골공사         | -         | 오배수설비공사 | 488,000   | 합계          | 105,323,000 |           |            |           |
|     |         |              |           |         |           | 간접비         | 설계비         | 456,000   |            |           |
|     |         |              |           |         |           |             | 감리비         | 1447,003  |            |           |
|     |         |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4,400,000   |             |           |            |           |
|     |         |              |           |         | 분담금 및 부담비 | 895,400     |             |           |            |           |
|     |         |              |           |         | 보상비       | 50,000      |             |           |            |           |
|     |         |              |           |         | 기타사업비성 경비 | 10,841,371  |             |           |            |           |
|     |         |              |           |         | 계         | 18,089,774  |             |           |            |           |
|     |         |              |           |         | 그 밖의 비용   | 4,614,669   |             |           |            |           |
|     |         |              |           |         | 합계        | 105,323,000 |             |           |            |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구분  | 구분     | 금액(원)         | 비 고  |
|-----|--------|---------------|--|
| 택지비 | 택지비가산비 | 4,194,589,622 | 택지대금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말뚝박기 공사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필요적경비   |
| 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 4,614,980,294 | 녹색건축,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범죄예방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분양보증수수료 등 |

**10 기 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기간  | 보증금액(원)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73,726,100,000 | 제 01282020-101-0008400 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증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p><b>【보증회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
|--|
| <p><b>【대물변제】</b>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b>【허위계약】</b>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
|--|
| <p><b>【입주금】</b>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

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지평건설(주)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지평건설

(주)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사항전부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 본 사업은 위탁자 겸 시공사 지평건설(주)이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지평건설(주)이며, 우리자산신탁(주)은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우리자산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지평건설(주)이 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3.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지평건설(주)과 수탁자우리자산신탁(주)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4. 매수인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를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및 시공사 지평건설(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수인은 반드시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지평건설(주)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8. 우리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지평건설(주)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습니다.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탁계약서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 업 주 체                      | 위탁자 겸 시공사                    |
|--------|------------------------------|------------------------------|
| 상 호    | 우리자산신탁(주)                    | 지평건설(주)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105(수동) |
|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3236               | 150111-0072300               |

- 견본주택 위치 : 충남 공주시 금흥동 640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월송지평더웰.com>)
- 분양문의 : ☎ 1588-804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